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문제 1】 (15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주)한국은 상품A(개당 장부가액: 800,000원, 개당 시가: 1,000,000원)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단,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은 모두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① 2019년 4월 15일 상품A 1개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를 받고 판매
 - ② 2019년 5월 15일 상품A 1개를 사내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직원에게 경품으로 지급
 - ③ 2019년 6월 15일 상품A 1개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에게 500,000원에 판매
2. (주)한국은 2019년 4월 2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B에 대한 창고증권(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됨)을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주)한국은 2019년 6월 20일(인도일) 내국신용장(개설일: 2019년 7월 20일)에 의하여 수출업자 (주)태백에게 제품C 10개를 2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다만, (주)태백이 해당 재화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주)한국은 2019년 5월 10일에 제품D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였으며, 수출대금 \$10,000 중 \$5,000는 2019년 5월 1일에 수령하여 5월 8일에 원화로 환가하였고, 나머지 \$5,000는 5월 20일에 수령하여 5월 25일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각 시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실제 환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5.1.	5.8.	5.10.	5.20.	5.25.
1,000원	1,100원	1,200원	1,150원	1,000원

5. (주)한국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수령과 동시에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수약정일에 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러나 매수자와 협의하여 기계장치를 2019년 6월 30일에 조기인도하였다.

- ① 계약금(2018년 12월 1일 회수약정): 10,000,000원
- ② 중도금(2019년 4월 1일 회수약정): 15,000,000원
- ③ 잔금(2019년 8월 1일 회수약정): 20,000,000원

6. (주)한국은 2018년 1월 5일 40,000,000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를 2019년 6월 30일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공할 당시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10,000,000원(시가: 15,000,000원)이다.

7. (주)한국의 대손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구분	채권금액	공급일	대손사유
외상매출금 A	2,200,000원	2013.11.20.	2019.1.10. 소멸시효완성
외상매출금 B	3,300,000원	2018.12.15.	2019.5.16. 채무자파산*1
받을어음	8,800,000원	2017.10.16.	2019.4.10. 부도발생

*1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

<요구사항>

(주)한국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 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1			
...			
7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6억원	7억원	13억원
면세사업	4억원	3억원	7억원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8년 제2기	72%	28%
2019년 제1기	69%	31%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25,000,000*1	25,000,000	50,000,000
면세사업	15,000,000	-	15,000,000
공통매입	5,000,000	9,000,000*2	14,000,000
합 계	45,000,000	34,000,000	79,000,000

*1 점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 포함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2019년 10월 5일에 매각한 기계장치(매각대금: 30,000,000원)의 매입세액 4,000,000원을 포함. 상기 '자료 1'의 과세기간별 공급 가액에는 기계장치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주)대한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19년 7월 20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대한은 동 차량을 2018년 9월 20일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5. (주)대한은 2018년 제2기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매입 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다. (주)대한은 2019년 12월 20일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포함한 매입 채무 7,7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요구사항 1>

(주)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가감 계 : (1) + (2) - (3)	

<요구사항 2>

(주)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가감 계 : (1) + (2) - (3)	

【문제 2】 (5점)

다음은 숙박업과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간편장부대상자)의 2019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연도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구 분	숙박업	음식점업
2018년	18,000,000원	22,000,000원
2019년	30,000,000원	20,000,000원

2.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19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타분
숙박업 매입액	5,500,000원*1	-
음식점업 매입액	3,300,000원*2	1,090,000원*3
공통매입액	1,100,000원*4	-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 중 1,100,000원은 접대비로 지출한 것임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3 농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매입하여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됨

*4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 매입액(귀속이 불명확함)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숙박업	음식점업
20%	10%

(물음 1) 간이과세자 갑의 2019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납부세액	

(물음 2) 간이과세자 갑의 2019년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납부세액 초과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구 분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문제 3】 (10점)

다음은 내국법인인 A법인 ~ D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4개 법인의 사업연도는 모두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로 동일하다.

< 자 료 >

1. 사회적기업인 A법인의 제19기 차가감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제19기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18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이 있다(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없음).
 - ① 이재민구호금품(법정기부금): 20,000,000원
 - ② 어음지급 지정기부금(어음만기일: 2020년 2월 10일): 5,000,000원
 - ③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현금): 30,000,000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2018년 6월 1일에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8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다.
 - ①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법인세법상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5년(신고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있다(잔존가액 없음).
 - ② 제18기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제18기와 제19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없다.
3. 건설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2019년 7월 1일 법정 기부금 해당 단체에 건물(취득가액: 2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0원, 시가: 100,000,000원)을 기부하고 이후 2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 ① 사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0
(대) 건물	2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00
 - ② 제19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500,000원이다.

4. 제조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2019년 4월 20일에 외국자회사(배당확정일 현재 1년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함)인 E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8,000,000원(E법인 소재지국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 ① E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며,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10,000,000원이다.
- ②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각 법인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문제 4】 (30점)

(물음 1) 다음은 (주)퇴직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제19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지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전기이월	800,000,000원	당기지급	160,000,000원
당기예치	450,000,000원	기말잔액	1,09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2. (주)퇴직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6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80,000,000원이다.

3. (주)퇴직은 제19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 전환금이 없다.

4. (주)퇴직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충당금의 제19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감소	160,000,000원	기초잔액	800,000,000원
기말잔액	1,090,000,000원	당기증가	45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5. 전기 말 현재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100,0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주)퇴직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퇴직이 퇴직연금충당금을 신고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퇴직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된 퇴직연금충당금은 800,000,000원이다 (자료상의 4번 사항과 5번 사항은 무시한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3>

<요구사항 2>에 따라 퇴직연금충당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주)퇴직의 제19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과목	기초	당기 중 증감		기말
		감소	증가	

(붙임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투자(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보유주식 (주)A

- ① 2014년 5월 1일에 (주)투자는 비상장법인 (주)A의 주식 1,8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A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 ② (주)투자는 2018년에 (주)A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식수	무상주 재원
2018.7.1.	300주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2018.9.1.	2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 ③ (주)A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투자는 보유주식 중 400주를 반환하고, 감자대가로 주당 21,000원의 현금을 2019년 3월 15일(자본감소 결의일: 2019년 3월 2일)에 수령하였다. 이에 대한 (주)투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A의 주식취득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는 없었다.
(차) 현금 8,400,000 (대) 금융자산 8,400,000

2. 보유주식 (주)B

- ① 2018년 2월 1일에 (주)투자는 비상장법인 (주)B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 (주)B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 ② 2019년 7월 1일에 (주)투자는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00주를 수령하였다.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 ③ 자본전입결의일 현재 (주)B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자기주식수는 40,000주이다.

- ④ (주)B의 주주 중에 (주)투자와 특수관계인은 없다.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는 (주)투자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 ⑤ (주)B의 무상주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소각일: 2018.6.5.)	20,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00원
이익잉여금	280,000,000원
합 계	400,000,000원

- ⑥ (주)투자는 무상주 수령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주)투자는 제19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하	30%

<요구사항 1>

(주)투자의 제19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을 피출자법인 별로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피출자법인	의제배당액
(주)A	
(주)B	

<요구사항 2>

(주)투자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붙임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제조(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이자수익

(주)제조는 2018년 1월 2일 국내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동 이자는 매년 1월 2일에 지급된다. 이자수익과 관련된 (주)제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제18기>

2018.12.31.

(차) 미수이자 7,000,000
(대) 이자수익 7,000,000

<제19기>

2019.1.2.

(차) 현금 6,020,000
 선급법인세 980,000
 (원천징수세액)
(대) 미수이자 7,000,000

2019.12.31.

(차) 미수이자 6,000,000
(대) 이자수익 6,000,000

2. 배당금수익

- ① (주)제조는 2018년 1월 27일에 상장법인 (주)생산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
- ② (주)제조는 (주)생산으로부터 현금배당금 3,000,000원과 주식배당 2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가액: 9,000원)를 수령하였다. 동 배당의 배당기준일은 2019년 12월 1일, 배당결의일은 2019년 12월 23일, 배당지급일은 2020년 1월 2일이다.

③ (주)제조는 현금배당에 대해 제19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차) 미수배당금 3,000,000
(대) 배당금수익 3,000,000

3. (주)제조는 제19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30% 이하	30%

<요구사항 1>

(주)제조의 제19기 이자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제조의 제19기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붙임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주행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주행은 2019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1대를 50,000,000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동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2019년 1월 1일 가입되었다.
3. 제19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 계산서에 계상되었다.

항 목	금 액
감가상각비	8,000,000원
유류비	3,500,000원
보험료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그 밖의 유지비용	700,000원
합 계	14,000,000원

4. 회사가 작성한 운행기록부상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상 주행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상 주행거리	19,000km

<요구사항 1>

(주)주행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주행이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행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붙임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접대(중소기업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다.

< 자 료 1 >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780,000,000원(특수 관계인 매출 없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12월 31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으나,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5,000,000원이 있다.
 -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2019년 12월 28일에 대금을 선수령(인도일: 2020년 2월 3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49,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합 계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권	-	42,000,000원	42,000,000원
영수증 수취권	700,000원	2,500,000원	3,200,000원
현물접대비	-	4,500,000원	4,500,000원
합 계	700,000원	49,000,000원	49,700,000원

위의 접대비 중 현물접대비는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주)접대의 제품(원가: 4,000,000원, 시가: 5,000,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4,500,000
 (대) 제 품 4,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 (주)접대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금액 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 하였다. 동 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되었다.
- 문화접대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없다.

5.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10,000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접대의 제19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시부인대상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시부인대상 접대비	
접대비 한도액	

< 자 료 2 >

- 시부인대상 접대비는 39,000,000원이고, 접대비 한도액은 12,000,000원이다.
-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다.
 - 판매비와관리비: 21,000,000원
 - 건물: 18,000,000원
- 접대비를 포함한 건물(2019년 취득)의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며, 제19기에 감가상각비로 20,000,000원(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손금한도 내 금액임)을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접대의 제19기 사업연도 접대비와 건물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5】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십시오.

< 자 료 1 >

1.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3.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1,200,000원
4.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7,000,000원
(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4,000,000원 포함)
5.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5,000,000원
6. 국외은행 예금이자: 7,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7.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 2,000,000원
8.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요구사항 1>

갑의 무조건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십시오.

(답안 양식)

원천징수세액	
--------	--

<요구사항 2>

갑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십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요구사항 3>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십시오. 단,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15,000,000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배당소득은 전액 Gross-up대상임)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붙임 2) 제조업을 영위(복식부기의무자)하는 거주자 을(62세, 남성)의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2 >

<연금소득 내역>

1. 2019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2014년 1월 1일 가입) 평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연퇴직소득	10,000,000원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	29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2.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에는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500,000원이다.

4. 을은 연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수령액은 65,000,000원이다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사업소득 내역>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대표자 을의 급여: 2,000,000원
 3. 차입금(2018년에 차입)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000,000원(연이자율 14%)
- ② 저축은행차입금이자: 7,300,000원(연이자율 10%)

- 4.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지출액: 500,000원(증명서류를 분실함)
- 5.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9,500,000원
- 6.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손실: 4,000,000원(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 7.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외환차손: 3,000,000원(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 8. 60일 동안 부채 합계가 사업용자산 합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인출금적수는 532,9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을의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연금수령한도	
--------	--

<요구사항 2>

을의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연금수령한도는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총연금액(연금계좌)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요구사항 3>

을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필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	

(붙임 3) 거주자 병(43세, 여성)의 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과 같을 때 아래 요구 사항에 답하십시오.

< 자 료 3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	총급여액 25,000,000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14,000,000원*1	
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년)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비용 6,000,000원(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비 고
부친	67세	소득없음
모친	71세	장애인, 2019년 3월 4일 사망
배우자	46세	퇴직소득금액 80만원, 총급여액 400만원(일용근로자 아님)
장남	20세	근로소득 연 200만원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차남	18세	소득없음

3. 교육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8,000,000원
- ② 장남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개발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5,000,000원
- ③ 차남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2,000,000원
- ④ 차남에 대한 교복비: 600,000원
- ⑤ 차남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500,000원

4.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않음).

5. 주택자금(병은 무주택세대주임) 및 보험료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000,000원
- ②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00,000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임)
-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4,000,000원

6.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0%이다.

7.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요구사항 1>

병의 인적공제액 및 특별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십시오.

(답안 양식)

인적공제액	기본공제액	
	추가공제액	
특별소득공제액		

<요구사항 2>

병의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십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요구사항 3>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병의 교육비세액 공제액 및 기장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교육비세액공제액	
기장세액공제액	

【문제 6】 (6점)

거주자 갑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토지A(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일	2019.12.12.
취득일	2009.10.18.
실지양도가액	20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비용	4,000,000원

2. 갑은 토지A를 아들 을에게 양도하였다(양도당시 시가: 220,000,000원).

3. 토지A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후 매 3개월마다 25,000,000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다(현재가치 평가 금액: 180,000,000원).

4. 토지A의 실지취득가액에는 취득세 3,000,000원(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600,000원을 감면하기 전 금액임)이 포함되어 있다(적격증명서류 분실).

5. 양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2,000,000원, 공증비용 5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적격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6. 토지A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갑은 2019년에 토지A 외에 양도한 다른 자산은 없다.

7.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0%이다.

8.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요구사항 1>

갑의 토지A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요구사항 2>

갑의 토지A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양도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산출세액	

【문제 7】 (10점)

(물음 1) (주)대한과 (주)민국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은 외아들인 거주자 을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자료 >

1. 갑은 (주)대한과 (주)민국의 주식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대한과 (주)민국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2. 갑은 보유하고 있던 (주)대한의 주식 중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3.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민국은 직영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주)대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 갑이 을에게 (주)대한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대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다.

<요구사항>

을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물음 2) 다음은 거주자 병(45세)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료 >

1. 병이 증여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증여자	증여일자	유형	증여재산가액
외조모	2017.5.1.	토지	15,000,000원
조부	2017.7.1.	현금	10,000,000원
부친	2018.6.1.	현금	15,000,000원
모친	2019.3.1.	현금	50,000,000원
조모	2019.3.1.	토지	25,000,000원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바 없다.

증여자	증여일자	유형	반환일자
외조모	2017.5.1.	토지	2017.8.2.
조부	2017.7.1.	현금	2017.9.2.

3. 상속세 및 증여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요구사항>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외조모		
조부		
부친		
모친		
조모		

여백